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문형주 의원(서대문3)

존경하는 이상목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문형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안은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대
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,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결
정되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
조례의 불합리한 규제와 법률 체계 모순을 바로잡아 시설을 대관하는
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

지방자치단체의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제한하는 「지방재
정법」 개정규정이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술관이 미술문
화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
접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
라며,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